

제2장 난민인정절차 등

<p>제5조(난민인정의 신청) ① 스스로 난민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.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(이하 “사무소장”이라 한다),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(이하 “출장소장”이라 한다)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그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난민인정의 신청) ① 스스로 난민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<u>구두 또는 서면에 의해서</u>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을 신청 할 수 있다. <u>난민신청자는 한글이나 영어 또는 두 언어 모두 능숙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모국어로 작성한 난민인정신청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(이하 “사무소장”이라 한다),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(이하 “출장소장”이라 한다)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난민신청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. 신청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다</u></p> <p>③ <u>국가기관에 난민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공무원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의 통지 등 난민신청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이 조항에 관한 UNHCR의견 “난민지위신청은 신청자가 박해나 심각한 위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영토로 돌아가지 않을 국제적 보호를 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이루어진 것이다. 난민지위신청은 한 개인이 법무부 대표나 경찰, 국경</p>	

수비대, 또는 기타 대한민국의 공무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박해나 심각한 위협을 당할 위험이 있는 영토로 돌아가지 않을 보호를 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이루어진다. 난민신청은 대한민국이 관할을 지니는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다.

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주장을 담은 한글이나 영어 또는 두 언어 모두 능숙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모국어로 작성한 난민인정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 제출함으로써 난민인정신청을 확인한다. 신청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다”를 반영함.

<p>제8조(난민인정의 심사) ①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난민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성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난민인정의 심사) ①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</u> 난민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성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<u>난민신청자로부터 면담내용의 녹음 혹은 녹화 요구가 있는 경우 면담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여야 한다.</u></p>
--	---

이 조항에 관한 UNHCR의견은 1심 면접이 지연될 수 있는 최대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임.

난민인정에 관한 모든 분쟁이 면담시 진술의 일관성과 통역의 정확성에 관한 것인 바 현행 제도하에서는 면담 진술 및 통역내용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국어로 기재된 면담기록부 밖에 없으므로 면담과 통역내용을 기록하여 사후에 증거로 삼기 위하여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면담내

용을 녹음 내지 녹화할 필요가 있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영상면담실이 있으므로 녹음, 녹화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기술적 문제가 없음

제14조(통역)	
② 난민신청자는 자비로 본인이 지정하는 통역에게 통역하게 할 수 있다.	삭제
UNHCR의견은 통역의 편파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난민신청인이 지정하는 통역을 동반하지 못하도록 권고함	